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의 구분이 모호한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7가단143837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병원에서 요추 수술 후 독립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지불완전 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마비 증상은 요추 4-5번간에 시행된 이 사건 수술보다는 기왕증인 뇌병변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3년 봄경부터 걸을 때 허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절뚝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른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3. 7. 23.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CT,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요추 4번의 전방전위증,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2013. 8. 28. 요추 4-5번간 척추 유합술 및 감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법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현재 양하지의 근력이 약화되어 책상을 손으로 짚고 일어서서 3~4 발자국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진행이 어렵고,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독립보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위 수술 직후부터 보조기를 차고 워커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보행이 불가능해졌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척수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및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만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경막손상 또는 경막 손상에 의한 뇌척수액 유출을 시사하는 소견을 찾을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척추유합술 도중 신경근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그 증상(위약, 감각이상, 통증)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수술 전후로 원고에게 하지 위약이 발생하였다는 기재는 없고, 오히려 위 수술 후 파행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 3.경 및 2014. 8.경 소외 병원에서 이루어진 외래진료기록에도 원고가 하지의 근력저하,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수술 후 약 3년 뒤인 2016. 5. 24.경에 이르러 원고가 보행의 어려움

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처음 기재되어 있다. ③ 일반적으로 요추 4-5번 척추신경근 손상이 있으면 족부 및 제1족지의 근력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3. 8.경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양측 엄지발가락 배굴 및 양측 족부의 능동적 운동은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 6. 7.자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의 양측 상지에서 감각신경전도의 속도가 감소하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양측 하지의 신경전도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고, 원고의 우측 요추 4-5번 척추 주위 '근육'에서 비정상 소견이 관찰된 점, 통상 근육손상으로 신경근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척추 주위 근육 이상 소견은 수술방법이 고식적 등 배부 절개 및 봉합에 의한 근육손상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요추 4-5번에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09년경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2011년경 우측 두정후두부위의 뇌엽출혈을 앓았으며, 2013. 4.경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피질하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원고의 위 기왕력을 고려하면,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마비 증상은 요추 4-5번간에 시행된 이 사건 수술보다는 기왕증인 뇌병변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유사하고, 특히 신경 근전도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신경근병증과 근육 손상이라는 두 가지 소견이 있어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당 법무법인은 수술 직후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다가 3년이 지나 처음 발생한 점,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과 기왕의 뇌병변으로 인한 증상이 유사하지만 신경 근전도 검사 결과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구별해낼 수 있는 점, 기왕증으로 인해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입증하였다.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유사한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진료기록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수의사

TEL. 02 565 9801

E-mail. smlee@lkpartner.co.kr